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비용 국고 보조 근거 마련〉

■ 조지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640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비용 국고 보조 근거 마련 ..... | 2 |
| ※ 참고자료 .....                        | 5 |

## I. 제안경위

2025년 4월 8일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를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전할 경우에도 국가가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63조).

### Ⅲ. 검토의견

#### 1.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비용 국고 보조 근거 마련

개정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시 그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 신설).

#### [ 개정안 조문대비표 ]

| 현행              | 개정안                                                               |
|-----------------|-------------------------------------------------------------------|
| 제63조(국고보조) (생략) | 제63조(국고보조)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 <신설>            | ② 국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이전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현행법상<sup>1)</sup> 국가는 하수도 설치·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지자체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해 관할지역의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책무가 있으며,

국가는 동법 제63조에<sup>2)</sup>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개축하는 공공하

1) 「하수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하수도의 설치·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할 책무를 진다.

수도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고, 2025년 기준 3,006억원을 보조하고 있음.<sup>3)</sup>

그러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이전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악취·소음 등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전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된다는 점이 지적됨.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전하여 개축하는 경우에도 국고로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전·개축에 대한 지원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정비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의가 있음.

다만, 환경부는 한정된 재정 여건상 민원 등을 이유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전’하는 것에 대한 국고 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현재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이전 사업(5개)에 국비 지원을 가정할 경우 연평균 1,093억원<sup>4)</sup>(’25년 하수처리장 개선사업 예산의 1/3)이 소요되어 일부 지자체에만 지원이 한정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2) 「하수도법」 제63조(국고보조) 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수처리장 설치·개축 사업의 지자체 보조율은 2022년 신규까지는 10~80%이고, 2023년 신규설치·개축사업부터는 60%를 국고 보조함. 참고로, 최근 10년간 하수처리장 설치 및 개량 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다음과 같음.

[ 하수처리장(개량사업 포함) 예산 추이 ]

| 연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
| 금액<br>(억원) | 3,366 | 2,487 | 3,362 | 2,467 | 2,174 | 2,058 | 2,137 | 3,507 | 3,834 | 3,006 |
| 사업수<br>(개) | 141   | 168   | 181   | 201   | 172   | 187   | 210   | 220   | 212   | 183   |

자료: 환경부

4) 총사업비 18,215억원 × 보조율 30% / 5년(평균 공사기간) = 1,093억원/년

[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사례(2025.6.기준) ]

| 연번  | 시·군 | 시설명    | 시설<br>용량<br>(만㎥/일) | 경과연수<br>(년) | 공사기간              | 총사업비<br>(억원) | 사업 위치           |
|-----|-----|--------|--------------------|-------------|-------------------|--------------|-----------------|
| 1   | 대전시 | 대전     | 65                 | 36          | '23~'28           | 7,176        | 대전 유성구 금고동 103  |
| 2   | 남양주 | 제1화도   | 5.1                | 33          | '23~'26           | 748          | 남양주 화도읍 폭포로 562 |
| 3   | 춘천시 | 춘천     | 15                 | 36          | '25~'29           | 2,865        | 춘천시 칠전동 449-1   |
| 4   | 평택시 | 통북     | 10                 | 28          | '25~'28           | 2,112        | 평택시 신대동 690-36  |
| 5   | 대구시 | 달서천/북부 | 32                 | 39 / 29     | '26~'30<br>(설계 중) | 5,314        | 대구 서구 달서천로 7    |
| 합 계 |     |        |                    |             |                   | 18,215       | -               |

자료: 환경부

문 의 처

02)6788-5546

## ※ 참고자료 : 하수처리장 확충 지원 사업 개요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공중위생 향상과 4대강 등 주요 하천 및 상수원의 수질 개선을 위해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하수처리장 확충 지원
- (사업기간) 1992 ~ 계속
- (지원형태) 지자체 보조 (국비 보조율: 광역시 30%, 시군 60%)
- (시행주체) 지자체
- (지원근거) 하수도법 제3조, 제63조

### □ 사업 시행 체계

